국·공립대학 도서관의 외부이용자 서비스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 도서관
홍 금 초

< 목 차 >

Ⅰ. 시작하는 말

Ⅱ. 대학도서관 개방의 배경과 성격

Ⅲ.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외부이용자 서비스 현황
1. 국·공립대학도서관 개방의 명칭
2. 개방 대상 조건 및 대출 규정
3. 외부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Ⅳ. 외부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제안

Ⅴ. 맺는 말

I. 시작하는 말

최근 수 년 동안 주요 대학도서관들이 일반시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업무환경이 인원은 감소하고, 본래의 봉사대상인 대학구성원-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종류는 더 많아지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대학도서관들이 업무량의 증가, 외부이용자로 인한 면학분위기 손상과 자료취급상의 책임문제 등을 감수하고 외부인에게까지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업무의 참고자료로서 국·공립 대학도서관들의 개방을 이끌어온 요인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대학도서관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 지식정보자원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 대학 수의 증가,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의 대학의 생존방식 등은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다. 대학도서관의 운영방식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를 겪었고, 현재도 변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가장 많이 변화한 부분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업무처리 및 정보제공 방법 면에서의 변화이다. 면대면(face to face) 의사소통을 하고, 종이에 기반하여 수작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이 그리 오래 전의 일은 아니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는 실로 급속하여서, 앉은 자리에서 정보를 검색(Online Public Access Catalog)하고 원문을 보는 등의 상황은 이제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대학도서관의 또 다른 변화는 서비스 대상을 대학 구성원에서 일반시민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대학들이 근래 들어 대학과 사회와의 연계를 의식하여 일반시민에게 대학 시설물을 개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기관의 이런 추세와 흐름에 따라, 대학 도서관들이 시설 및 자료 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일반인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역할은 모기관인 대학의 기능 수행을 돕는 것이다. 대학의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클라크 커가 주장한- '연구·교육·봉사'의 3가지 기능수행으로 답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식의 생산, 지식의 전수, 생산된 지식을 통한 사회봉사를 대학의 사명으로 보는 것이다. 근래에 대학은 전통적인 연구·교육 외에도 산학협력 등 지식을 통한 지역사회봉사도 요구받고, 또 내부적으로도 대학자체의 존립을 위한 방편으로 사회봉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지원시설로서 '연구·교육·봉사' 3가지 기능수행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일반시민 사회의 대학소장 자료이용 요구에 대한 응답이면서, 대학들이 처한 사회적 존재위치 변화에 따른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대학도서관의 개방에 관련한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대학도서관 개방의 배경과 성격

대학 및 대학 도서관을 대학 외부의 일반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자원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와 같은 인식의 변화, 증가 된 대학 수에 못 미치는 학생의 수와 같은 사회적 환경요인,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 확산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른 자구노력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지식·정보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지식·정보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과거와 달리 지식·정보가 직접적인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되고, 지식의 반감기(半減期)는 더욱 짧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식 습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문에 관련한 직업종사자가 아닌 일반시민에까지 확산된 평생학습의 욕구가 정보자료원의 필요를 부각시키고 있다.

대학 외부 이용자인 일반시민을 위한 지식정보원이라면 공공도서관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근래 들어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상당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몇 몇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정보공급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에는 미약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지원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의 예산으로 광범위한 전 주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자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의 대학도서관에 관심을 돌리게 만들었다. 사회일반의 요구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공급원으로서 지역사회 내의 대학도서관을 일반시민에게도 개방하라는 것이었다. 현재의 대학도서관의 개방에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요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졸업생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학도서관 이용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거나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들은 도서관 개방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을 환기시켜 주었다. 시민사회 단체의 도서관운동도 정보자료의 공공성에 관한 인식의 전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 이전에도 대학도서관이 아주 폐쇄적인 아니었다. 대학도서관들은 별도의 명칭 없이 외부 이용자의 관내 열람과 복사 등을 비공식적으로 허용하거나, '관장이 허락하는' 정규 구성원이 아닌 이용자에게도 문을 열어왔다. '특별'하게 허용된 개방은 열람실 이용이나 자료열람·복사와 같은 부분적인 개방이 대부분이고, 대출이 허용된 경우에는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특별허용은 학내인사의 인보증과 같은 연고에 따른 요건을 구비해야하는 계층성을 띤 개방이고, 연고제(緣故制) 개방이었다. 학교와 연고가 없는 일반인들, 특히 대학교육의 혜택과는 거리가 먼 계층, 주변에 대학교수나 직원에게 보증을 부탁하기 어려운 계층에게는 제한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도서관의 개방은 개방의 정도에 따라 ① 누구라도 간단한 수속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대부분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개방형) ②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이 주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준개방형) ③ 대학 또는 도서관과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부분개방형) ④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이용시키는 경우(부정형) ⑤ 외부인의 이용을 금하는 경우(폐쇄형)로 나눌 수 있다[1].

유형분류에 따르면 이전의 개방은 '준개방형 혹은 부분개방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대학도서관이 개방되었다고 할 때는 대학 구성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이용시켰던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를 대중에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개방 시기를 볼 때, 사회일반의 대학도서관 개방의 요구가 도서관의 공공성이나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개방을 직접 이끌어 내지는 못한 것을 보여준다. 대학도서관이 외부 일반인에게 개방을 한 첫 사례는 1994년 사립대학 도서관이었고, 국공립대학은 1998년에 개방을 하였다(양정은, 2005, 아래<표 1> 참조)[3].

<표1>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주민 개방 시기>

대학 \ 년도		1994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무응답	합계
국공립대학도서관	개방 도서관수	1	0	0	1	2	2	4	5	1	4	1	2	22
	비율(%)	4.5	0	0	4.5	9.1	9.1	18.2	22.7	4.5	4.5	4.5	9.1	100
사립대학교도서관	개방 도서관수	1	2	7	4	8	12	5	9	6	6	0	8	68
	비율(%)	1.5	2.9	10.3	5.9	11.8	17.6	7.4	13.2	8.8	8.8	0	11.8	100

1) '岩猿敏生, 「대학도서관의 관리와 운영」, 박준식, 이애란 공역, (대구 : 계명대학교출판부, 2002), p.45-46'양정은(2005), 「국내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정보과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p.7에서 재인용

2) 윤희윤(2003),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말 한다", 「도서관 문화」, vol.44 no.3, p.5,

3) 양정은(2005), 국내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p.21-29

(양정은 p.29 표 변형)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의 개방에 대하여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오늘 날 대학도서관이 피할 수 없는 서비스(36.4%)”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해야 할 업무이나 대학도서관은 협력업무(27.3%)”라는 응답이 그 다음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서비스(27.3%)에 불과하였다. “대학도서관의 업무가 아니다(9.1%)”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공립대학이 연고개방에서 보다 보편적 일반시민에게 자료의 대출을 허용한 것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국・공립 대학도서관 개방에 영향을 준 한 요인은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정부의 지역화 정책이다. 대학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식을 통하여 지역의 기업과 협력하였으며, 일반시민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는 등 관계를 형성하였다.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체 관련자나 강좌를 수강하는 일반 시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4].

대학도서관에 보다 직접적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을 들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에 일반 시민사회의 대학도서관 개방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개방하는 일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5], 2002년에는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6]. 대학도서관을 대학내부 시설에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공기반시설로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학습 및 지식정보 지원기능 강화, 대학별 특성화 도서관 설치 등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대학평가에 반영되어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되었다.

세계화는 세계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신자유주의 물결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경쟁을 유도했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생존을 일반화 시켰다. 교육도 공공재로서 접근되기 보다는 교육시장의 상품으로 인식된다. 신자유주의적 환경 하에서 대학들은 대학 간 서열평가와 평가와 연계된 재정의 차등지원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내 대학들도 교육소비자로서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떤 대학으로 인식되는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의 개방이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은 외면하기 어려운 유인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온 시기(1999년, 2002년)와 2000년-2002년은 대학도서관 개방이 붐을 이룬 시기와는 연관성을 보인다. 대학들은 지역주민에게 대학을 개방

---

4) 송영희, 대학도서관의 특별이용자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2001. 제32권 제3호. p.6

5) 정병진(2001),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 : 원광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32권4호. pp. 395

6) 심효정(2003),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연구, 도서관 vol.58, no.3 p.1000

함으로써 재정지원과 연계되는 평가의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이미지로 홍보되어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7].

대학도서관들은 대학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고자 사회봉사차원에서 도서관을 개방하였다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과거 대학들이 일반에게 도서관을 개방한 것은 -비록 부분 개방이고, 연고에 따른 개방일지라도- 오히려 순수한 봉사차원의 개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의 사회적 환경은 무풍지대의 상아탑 내부의 사회이었고, 일반시민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무슨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확산되고, 학생수의 감소로 정원미달의 학과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되면서 대학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재정지원과 연계되는 평가서열에서 뒤처지는 것은 향후 대학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다. 신자유주의의 승자독식(勝者獨食) 시스템에서,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대학들도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 대학도서관들은 사회적 이미지 향상 효과와 평가서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도서관은 주변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여 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사회봉사의 책무를 다하라는 관할당국의 방침 따라 개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도서관의 개방에 영향을 준 것은 사회일반의 개방요구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평가 지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일반의 개방요구는 대학도서관 개방을 이끌어낸 교육부의 방침에 영향을 준 간접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교육부의 방침은 대학도서관 개방의 직접적 요인 이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공립대학 도서관 개방의 성격은 1) '부분 개방'에서 자료의 대출까지 시행하는 '완전개방'의 성향을 띤다, 2)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용하던 '특수적 개방'에서 일반시민 모두에게 문을 여는 '보편적 개방'의 성격을 띤다, 3) 국・공립대학도서관의 일반시민에의 개방은 외적으로는 '자발적 개방'이나, 내면을 보면 교육부정책에 따른 타율적인 측면이 강한 일종의 '생존형 개방'이라고 할 수 있겠다.

III. 국・공립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서비스 현황

본 글의 고찰 대상은 '국・공립 대학도서관 협의회' 회원도서관이다. '국립대학도서관보(2007)에 수록된 대학은 50개교로 일반대학교 30개교, 교육대학교 11개교,

7) 심효정(2003), 위의 글 pp.4-5

공립·특별법대학교 9개교이다. 2007년 6월-7월 현재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외부이용자 서비스의 내용을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였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실린 안내는 도서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신뢰할만하다.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는 다른 어떤 안내 자료보다 도서관을 알리고 보여주는 효과적인 매체라고 생각한다. 도서관 업무에 관한 질문이나,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화나 방문보다는 인터넷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가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누락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외부이용자에 대한 일회적이거나 이벤트성 서비스는 또한 제외되었을 것이다.

국공립 대학도서관들이 대학 외부에 도서관을 개방하면서 사용하는 명칭은 몇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몇 가지의 명칭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외부이용자 서비스'를 선택하였다.

외부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는 ① 도서관 홈페이지에 외부인으로서 도서관을 이용할 경우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명시할 것 ② 학교와 연고가 없는 외부인에게 자료를 대출(관외대출)할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대출 책수 및 기간은 기타 관장이 정한다' 와 같이 기준을 밝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대학원 수료자, 휴학생, 졸업생, 대학 및 대학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허용하는 경우는 개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회원의 자격을 일반회원과 우대회원(혹은 특별회원, 평생회원)등으로 나누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회원에 중점을 두었다.

대상 대학 중 20개교의 일반대학교, 1개교의 교육대학교, 1개교의 공립·특별법대학이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었다. 이들 학교의 외부이용자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50개 회원교 중에서 22개교가 외부이용자에게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절반에 못 미치는 수이다. 단순히 숫자로만 볼 때에는 국·공립대학도서관의 개방이 저조한 것 같으나 내용면으로 보면 각 도의 거점대학 등 규모가 큰 대학은 모두 개방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에게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졸업생(순천대, 창원대)에게 학부생과 같은 자격으로 대출을 하고, 학생들이 밀집되지 않는 방학 중에는 지역주민에게 열람실을 개방(서울교대)하거나 자료의 열람 복사를 허용하는 학교들이 많다.

도서관을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학들은 교육대학, 사관학교, 예술대학 등 특수목적 설립 대학들이다. 이용자의 요구측면에서도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의 개방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1. 국・공립대학도서관 개방의 명칭

대학도서관의 개방에 명칭은 대략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연고를 강조한 명칭, 제재에 대한 허가를 전제로 한 듯한 명칭, 도서관 소속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명칭, 도서관 내부와 외부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명칭이다(표<2> 참조).

지역적 연고를 강조한 명칭은 '시민열람, 지역주민 회원, 지역주민 이용, 지역주민 도서관 회원'이다. '시민열람'은 해당 대학 소재 시(市) 거주민을 대상으로 개방한다는 뜻이고, '지역주민'의 경우는 해당 시(市)지역 및 도(道)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소재 시지역과 해당 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특별열람'은 외부이용자 서비스가 '제재에 대한 허용'이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듯한 명칭이다. 충북대의 경우 외부이용자 서비스에 대하여 '특별열람'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충남대의 경우 일반인에게는 '도서관 회원' 명칭을 사용하지만 졸업생, 휴학생, 전직교직원 등 학교와 연고가 있었던 외부이용자에 대하여 사용 '특별열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가장 많은 도서관이 사용한 도서관 개방제도의 명칭은 '도서관 회원'이었다. '도서관 회원'의 명칭은 중립적이고 개방된 느낌을 준다. '도서관 회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도서관들도 실제 회원대상은 모두 지역주민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서울대 도서관과 우대회원제도가 있는 대학 중 다수가 우대회원에 한하여 지역거주 제한을 두지 않았다.

<표2> <국・공립대학 도서관들의 개방에 대한 명칭>

명칭 / 기준	개방의 명칭	대 학	비 고
지역연고	시민 열람	강릉대, 충주대	
	지역주민 회원	강원대,	
	지역주민 이용	광주교대, 부경대	
	지역주민도서관회원제	전북대	
	지역주민자료대출회원제	경북대	
제재허용	특별열람	충북대, 제주대,	
중립적	도서관회원	공주대, 서울대, 안동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목포대	
	열린도서관회원	목포대	
도서관 내부외부	외부이용자 회원	전남대, 상주대, 부산대, 한경대, 한밭대	
	관외대출(외부이용자)회원	인천대	

또 다른 명칭은 대학 도서관의 당연 서비스 대상을 내부 이용자라고 보고, 대학 구성원이 아닌 이용자들을 '외부이용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관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학도 있다. 이는 외부이용자에게 관내 열람만을 허용하였것에서 관외로 대출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명칭이다.

2. 개방 대상 조건 및 대출 규정

외부인에게 개방을 하는 대학도서관들 중에는 일반회원과 학교연고자 및 특별 기여자를 우대(명예,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는 곳이 있었다. 일반회원에 가입하려면 '지역주민회원, 도서관 회원, 외부이용회원' 등 호칭에 관계없이 지역연고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서울대학교만은 일반회원 가입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다.

1) 일반회원

지역주민의 범위는 좁게는 '구(區)' 지역으로 한정한 1개교가 있었고, '시(市)' 지역으로 한정한 2개교이고 대부분 '시・도(市・道)' 지역이었다. 일반회원은 지역거주민의 자격으로 혹은 지역주민의 자격에 예탁금이나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8] 회원이 될 수 있다. 도서관 개방의 조건으로는 ① 지역주민이면서 신분증과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면 되는 곳, ② 지역주민이면서 보증인 보증을 받아야 하는 곳, ③ 지역주민이면서 예치금 납부를 요구하는 곳, ④ 지역주민이면서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곳 ⑤ 지역에 관계없이 회비납부 요건을 구비하면 되는 곳이었다(<표3>참조).

<표3> <일반회원의 자격 및 대출규정>

조건 \ 대학	대 학	대 출	비 고
지역연고주민	부경대, 상주대, 인천대, 충주대, 한경대, 한밭대	학부생과 같음	
지역연고주민이면서 보증인 보증	강릉대, 경상대	학부생과 같음	
지역연고주민이면서 예치금납부	강원대, 광주교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공주대, 목포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충북대,	강원,안동,전남,전북대,광주교대=학부생>공주대,목포대,충남대,한국교원대, 충북대	연회비 5만원

8) 서울대학교 제외, 서울대학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회원가입 가능

지역연고주민이면서 발전기금(회비) 납부	경북대, 부산대	학부생보다 못함	연회비 10만원
발전기금(회비)납부	서울대	5책 30일 (학부생10책 14일)	연회비 10만원

* 경북대 일반회원 5책 14일, 2회 연장가능(학부생 10책 14일, 2회 연장가)
부산대 일반회원 3책 14일, 1회 연장가능(학부생 10책 10일, 1회 연장가)

인적보증을 요구하는 곳은 교직원이나 소속기관장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예치금이 필요한 경우 금액은 모두 5만원으로 책정했다. 회비납부 회원제를 택한 도서관들은 연10만원으로 공통이다.

회원 가입 기간은 별도 표기가 없으나 이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경대 도서관은 매년 3월과 9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지역주민 회원신청을 받고 있다.

일반회원의 회원증 유효기간은 1년 혹은 2년이고, 예치금이 있는 경우 회원이 원할 경우 탈퇴 시 돌려준다[9]. 회원자격의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회비 납부 제도가 아닌 경우에는 회원자격의 유효기간에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제제를 위반하였을 경우나 거주지 이전을 하였을 경우 연장을 허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회원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표기를 하지 않은 도서관도 여럿 있었다.

일반회원의 대출 조건은 대체로 학부생과 같은 곳들이 많았다. 학부생보다 책수는 적고 대출기간은 긴 곳으로는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이고 공주대, 목포대, 한국교원대는 학부생의 대출규정 보다 좋지 못한 여건이었다.

2) 우대(평생・명예・특별・종신)회원

대학도서관들은 회원의 종류를 나주어서 관리하고 있다. 일반회원과 우대회원, 혹은 평생회원, 특별회원, 종신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 우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하는 도서관도 있다(<표4>참조).

<표4> <우대(평생, 명예, 특별, 종신)회원의 자격 및 대출조건>

조건 / 명칭	대 학	조건(1가지 항목만 충족 하면 됨)	대출조건	비 고
우	강원대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 이상	-5책30일	-대학원생과 같음

9) 공주대의 경우 예치금 잔환은1년 후에 가능

대회원		-도서관 발전기금 5백만 원 이상 -등록가능도서 5백 권 이상		
	경북대	*우대회원의 조건표기되지 않음	-10책 1개월	-대학원생 20책 1개월
	목포대	-대학발전기금 1백만 원 이상 -도서관발전기금 1백만 원 이상 -등록가능도서 5백 책 기증자 -귀중본 혹은 고서 1백 책 이상	-3책 10일	학부생,일반회원과 같음
	부산대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 이상 -도서기금 1백만 원 이상 출연 -도석 2백 권 이상 기증자	-5책 30일	*지역사회주민일것 (대학원생 20권 30일)
	충남대	-대학발전기금 5백만 원 이상 -도서관 발전기금 1백만 원 이상 -도서 5백 책 이상 기탁자	-3책 10일	기여도에 따라 평생회원 자격을 부여함
	충북대	-대학발전기금 5백만 원 이상 -도서관 발전기금 1백만 원 이상 -등록가능 도서 5백 책 이상 기증 -고서 1백 책 이상 기증자	-5책 30일	대학원생 10책 30일
	전북대	-대학발전기금 3백만 원 이상 -도서관 발전기금 3백만 원 이상 -등록가능도서 5백 권 이상 -귀중본·희귀본 50 권 이상	-5책 14일	-학부생과 같음 5년 유효
특별회원	서울대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 이상 -도서기금 5백만 원 이상 -도서 5천권 이상 기증자	-10책 30일	-10년간 유효 (발전기금1백만~1천만미만1년회원)
명예회원	안동대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 이상 -도서관 발전기금 1백만 원 이상 -등록가능 도서 1천 권 이상 -고서 1백 책 이상 -귀중본·희귀서(별도심사)기증	-3책 7일	-10년간 유효
종신회원	전북대	-1천만 원 이상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 이상 도서관 발전기금 -등록가능 일반도서 1천 권 이상 -귀중본·고한적 1백 권 이상	-5책 14일	-신분별 대출조건 차이 없음 학생과 같음
평생회원	전남대	-대학 및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5책 10일	-평생회원자격조건 불명확
	한국교원대	-1백만 원 상당 기여 -1백 책 이상 기증한자	-5책 10일	-대학원생10책 20일

우대의 실질적 내용은 일반회원과 큰 차이는 없다. 서울대학의 경우는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의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를 확연히 구분하고 있지만, 다른 대학들은 .대출 책수나 기간에서의 우대, 회원증 유효기간에서의 약간의 우대이다. 우대회원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종신유효기간으로 보인다. 짧은 곳은 5년동안,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는 10년동안 유효하다.

도서관들의 일반회원의 자격 대상과 예치금 등이 비슷한 반면에 우대회원이 되는 자격은 대학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기부금액 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1천만원 이상이고 가장 적게 책정한 곳은 1백만원 이상으로 10배의 차이이다. 도서기증 요건 역시 1천권 이상에서부터, 1백책 이상까지 10배 차이이다. 귀중본이나 희귀서의 경우 책 수에 관계없이 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대학도 있다. 개방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일반회원의 예치금 수준(5만원)이 동일하고 회원 비 기준(10만 원)이 동일한 것과 비하면 우대회원의 경우는 차이가 심한 편이다. 일반회원의 경우 높은 예치금을 책정한다면 실제적인 개방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의 형평을 고려하였을 것이나 우대회원의 경우는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자관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 책수는 일반회원과 같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책 수와 기간에서 더 나은 혜택을 받고 있다. 대학원생과 비교하여 볼 때, 일부대학은 대학원생과 같은 조건이었고, 대학원생 이상의 조건을 부여하는 곳은 없었다.

3. 외부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학 도서관들이 외부에게 제공하는 볼 때 다양하지 않았다. 외부이용자 서비스는 주로 대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용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도서관도 있는데, 신청양식이나 이용안내를 참조하였다. 국공립대학도서관이 외부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표5> 참조).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명시한 대학들도 있었으나,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신청양식이나 신분별 대출한도 안내를 보고 대출유무를 확인해야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도서관 회원 구분이 4가지나 되고 각기 허용하는 서비스 영역이 다른데, 그 내용을 표로 만들어 차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충주대학교 도서관은 외부이용자에게 모든 시설물을 전면 개방한다는 것을 밝히고,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시에 필요한 절차까지 명시하고 있다. 외부이용자 안내가 불분명하거나 분산되어 홈페이지 이곳저곳을 살펴보아야하고, 참조 안내를 찾아가도 별 내용이 없어서 불편한 곳도 있었다.

<표5> <외부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범위>

대학 / 종류	대출	상호대차	일반열람실	전자 도서관	연구지원	인터넷디스 크서비스	비 고
강릉대	o						신청서식 참조
강원대	o	o	o				
경북대	o						서비스 명칭참조
공주대	o	o	o				
목포대	o	o					
부경대	o			o			
부산대	o						
서울대	o						일반회원
	o	o		o	o	o	특별회원
안동대	o	o					
전남대	o						
전북대	o	o	o	o			
제주대	o						
충남대	o	o					
충북대	o	o					
한국교원대	o	o	o				지정열람실이용
한국해양대	o	o					
상주대	o		o				지정열람실이용
충주대	o	o	o	o			모든시설물이용
한경대	o		o	o			지정열람실이용
한밭대	o						
광주교대	o						
인천대	o		o				열람실1일50명한정

*자료실 출입·자료열람 및 복사·관내대출은 당연허용으로 간주, 별도 표기하지 않음

각 도서관들이 명시한 외부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홈페이지만을 참조했으므로- 홈페이지에 수록되지 않는 내용을 알 수 없다. 상호대차를 서비스 제공을 명기한 대학은 11개교로 절반의 숫자이다. 전자도서관항목을 명시한 도서관은 소수이나 별도의 인증장치가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이용가능 할 것이다.

외부이용자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는 있지만 초·중등생은 예외로 명기한 도서

관들이 있다. 전남대 도서관에서 초·중등학생들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데, 별관의 자유열람실 이용은 금지하고 있다. 열람실이 독서실화하는 분위기를 방지하고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자유열람실을 개방하는 도서관들도 외부인에게는 특정 열람실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추세이다.

IV. 외부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제안

대학도서관들은 외부인 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데 따르는 업무과중, 자료훼손 및 분실의 문제 등 부담을 감수하고 개방을 결정하였다. 도서관들이 제공하는 주요 외부 이용자 서비스는 대출 서비스, 상호대차, 열람실 이용이었다. 도서관마다 처한 지역사회 환경이 다르고 도서관의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외부이용자 서비스는 도서관 개방의 목적에 합당하고 외부이용자에게도 만족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에게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지역사회에 대학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시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장점은 대학도서관이 시민의 정보욕구에 부응하는 것, 정보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개방을 하고 있는 도서관의 거의 모두가 지역주민의 정보욕구충족과 지역사회 정보센터의 역할 개방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도서관 개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을 개방의 목적은 지역정보센터의 역할, 도서관 자료의 적극 활용,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등이지만, 실제로는 '대학이미지 제고 및 홍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10].

많은 대학들이 대학의 이미지 상승을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의 개방은 지방단위의 정책이 실행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여야 하는 지방대학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과 밀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반감을 높일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10) 양정은(2005), 앞의 책 25,
송영희(2001), '대학도서관의 특별이용자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3호. p.457.

2) 도서 대출에 수반되는 훼손·분실의 문제는 현실에 맞는 해결책으로 예치금의 상향조정 혹은 회원비 납부가 필요하다. 현재 일반시민 이용자에게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국·공립대학 도서관들은 예치금으로, 보증인으로, 보증인 없이, 회비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지역거주민의 자격만으로 대출하는 경우, 문제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주민의 이주나 기타 상황으로 인한 훼손·분실 등의 경우에 상식선에서 해결되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인 보증의 경우, 문제 상황이 발생시 보증인에게 실제적인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보증인도 자신의 보증 책임을 실감하지 않을뿐더러, 도서관측에서도 실제적인 어떤 절차를 취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인 보증은 '특수적 개방'에서 '보편적 개방'으로 변화하는 추세와도 거리가 있다.

예치금의 경우, 국·공립대학 도서관들은 공통으로 5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 금액은 현실적으로 대출도서의 변제금액이라기에는 너무 형식적이다. 실제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예치금은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일반시민들의 수용하기 적합한 제도는 예치금 제도라고 본다. 인 보증의 경우 보편적 개방이 되기 어렵고, 회비 책정의 경우 상황에 따라 반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치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외부이용자의 증가와 서비스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서 정보제공 서비스 및 회원가입의 유료화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에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찬반의 논란이 분분하였으나, 점차 유료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자료를 망라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들이나 특정전문주제 분야의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에서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유료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11].

현재도 발전기금 납부로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도서관이 있다. 국·공립 대학도서관에서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일반시민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발전기금 규정을 둔 도서관의 게시판에는 비용부과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대학의 이미지를 높이기보다는 불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중요시하는 입장이라면 신중을 기해야할 문제이다.

지역사회 거주민들에게 회비를 부과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인구, 경제수준과 대학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양과 질을 참작하여 결정해야할 것이다.

---

11) 송 영희(1999), '대학도서관을 위한 유료정보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0, no.1 pp.172-173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치금이나 회비회원제 등은 우리사회 빈곤층의 지식정보 접근을 막는 또 다른 장벽이 될 것이다. 지식・정보 접근권도 교육・의료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권리로 볼 수 있다. 현재 생활여건이 열악한 국민의 생존을 위하여 교육, 의료 등의 최소한의 조건은 공공의 몫으로 감당하고 있다. 대학도서관들도 정보공유의 사회봉사 차원에서의 자료개방이니 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12]. 일정기준 이하의 사회적 약자에게 '예치금이나, 회비를 받지 않고 도서관 자료제공을 허용' 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5) 대학도서관의 개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들이 개방의 대상을 지역 거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역주민이라는 조건만으로 개방하는 도서관과 인보증이 필요한 도서관 외에는, 예치금 및 회원회비(발전기금)납부 규정을 택한 도서관들이 많이 있다.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거주민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대했을 경우 실제 이용자가 증가하여 업무에 과중한 부담이 될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6)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외부이용자에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나 서비스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도서관은 매우 명확히 내용을 안내를 하는 반면, 일부 도서관은 외부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일부분씩 분산 안내하여서 대출규정 따로, 회원대상자격 따로 찾아야 되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이 생활화되었다. 이용자들이 찾기 쉽고 알기 쉽도록 명확한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맺는 말

지식정보의 공공성에 대한 일반 시민사회의 요구와 대학을 개혁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지침에 맞추어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대학도서관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개방에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것은 시민사회의 요구이고, 직접적인 개방요인은 재정지원과 연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으로 본다. 국공립대학의 개방은 교육부의 평가와 연계되는 재정지원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2000년을 전후하여 도서관의 외부인 개방이 봇물을 이루었다. 과거의 개방이 특정인사에게만 도서관 접근을 허락하는 '특별개방'이고 '부분개방'이라면 새로운 개

12) 현실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니 노숙자들이 몰려와서 잠을 자고, 흉기를 휘두른 적도 있었다(2006년 11월 14일 한국일보, 세계일보).

방은 '보편적 개방'으로 볼 수 있다. 개방의 과정을 볼 때, 대학도서관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율적 개방이었지만, 내부에서 보자면, 주변의 환경에 의하여 개방을 압박 당한 타율적인 개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공립대학 도서관 회원교 50개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은 도서관 중 22개교가 외부이용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대학 수로 절반이 안 되는 수이나, 규모가 있는 일반대학들은 모두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대출이고 상호대차와 일반열람실 이용을 허용하는 도서관도 여럿 있었다. 회원대상은 서울대학교와 우대회원(명예, 평생, 종신 등 포함)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사회 거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의 개방은 '지역제한 개방'이 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1) 지역사회에 대학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2) 예치금을 현실화하여 분실·훼손시의 실제적인 대책이 되도록 할 것 3) 대학도서관 개방의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던 것을 해제하여 일반시민에게도 가능하도록 할 것 4) 소장 자료의 망라성 ·전문성 등이 구비되는 도서관에서는 유료 서비스화 가능성의 모색 5) 현재 도서관들의 홈페이지에서 외부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안내 등을 제안하였다.

< 참 고 문 헌>

고성순(1999),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에 관한 연구", 전북 대학교 문헌정보학과「학술논문집」, vol. 5.

송영희(1999), '대학도서관을 위한 유료정보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0, no.1

— (2001), 대학도서관의 특별이용자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

심효정(2003),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연구", 「도서관」, vol. 58, no.3

양정은(2005), 국내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정보과학 대학원 석사논문.

윤희윤(2002), 「대학도서관 경영론」, 서울 : 태일사.

— (2003),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말 한다', 「도서관 문화」, vol.44 no.3,

이범준(2003), 지역사회 주민의 대학도서관 이용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 석사논문.

정병진(2001),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 「한국 도서관·정보학

회지」, vol.32, no.4
조수련(2003),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적용을 위한 환경개선 방안”, 「도서관」, vol.58, no.3
커어, 클라크 ; 이 형행 옮김(2000), 「대학의 효용 : 연구중심대학」, 서울 학지사.